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5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9. 18.
판 결 선 고	2018.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취득세 체납액 195,300원, 2014년 취득세 체납액 128,520원, 2014년 재산세 체납액 129,580원, 2015년 재산세 체납액 137,470원에 대한 각 징수처분[1]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1)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8.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서 '청구취지 기재 체납액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체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 기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5.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0. 2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6. 5. 26.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2016. 8. 19.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redacted]회생법원 2014하단8995, 2014하면8995).

나. 파산관재인은 2014. 10. 27. 파산선고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 3,139,010원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2016. 1. 27.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각 파산선고 후 변제기까지 발생한, [redacted]시 B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중가산금 195,300원, C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가산금 128,520원, D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중가산금 129,580원 및 파산선고 이후 부과된 2015. 8. 재산세(토지) 137,470원에 대한 각 체납세액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지방세가 면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지방세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지방세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방세가 면책되었다는 주장 외에 절차상 하자 등으로 징수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징수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면책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책허가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이고, 위 채권이 조세채권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파산선고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로서 재단채권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4)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징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지방세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2), 3) 주장에 관한 판단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가 2016. 5. 26.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파산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납세의무자를 파산관재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4)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민선

판사 김성겸

판사 성기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0

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